#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23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김기웅

김소희 · 김용태 · 권영진

구자근 • 정희용 • 이종배

김상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에 직면한 농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지역개발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하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 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 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 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 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으로 한다. 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 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 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사 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 4. (생 략)

② ~ ⑥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